

제개정 예고문

「회계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「사규관리규정」 제10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 년 10 월 23 일

경기도시공사 사장

「회계규정」 일부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 및 역할과 관련한 상위법령(지방회계법)의 근본취지를 준용하여 공사 회계규정 제6조 “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” 및 제72조 “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”을 개정 하고자함

○ 지방회계법에 따른 임직원의 관직 및 역할

- | |
|---|
| ▶ 지출원(지출 관계서류 검토, 지정금고에 지급명령) ⇒ “회계부장”(지출기관 역할) |
| ▶ 출납원(현금, 예금, 유가증권의 보관) ⇒ “재정예산부장”(수납·출납기관 역할) |

2. 주요내용

○ 제6조(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) ③항의 5호, 11호

· 5호. 지출원 : 회계세무부장, 재정예산부장(삭제)

· 11호. 수입자출와(삭제) 현금 및 “예금”(신설), 유가증권 취급원 : 재정예산부장

○ 제72조(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)

·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독은 지출원(삭제) “현금 및 예금, 유가증권 취급원”(신설)이 총괄한다.

3. 의견제출

이 「회계규정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시공사사장(경영기획처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사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- 주 소 : (16556)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도시공사(경영기획처)
- 전 화 : 031-220-3065
- 팩 스 : 031-220-3059
- 이메일 : jykim1107@gico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 : 우편, 이메일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붙 임 : 「회계규정」 개정(안) 일부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규정 제 호

회계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(안)

회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)

③항의 5호. 지출원 : 회계세무부장

③항의 11호. 현금 및 예금, 유가증권 취급원 : 재정예산부장

제7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(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)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독은 현금 및 예금, 유가증권 취급원이 총괄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6조(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) ③항-5호. 지출원 : 회계세무부장, 재정예산부장 ③항-11호.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원 : 재정예산부장	제6조(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) ③항-5호. 지출원 : 회계세무부장 ③항-11호. 현금 및 예금, 유가증권 취급원 : 재정예산부장
제72조(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)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독은 지출원이 총괄한다.	제72조(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)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독은 현금 및 예금, 유가증권 취급원이 총괄한다.